

# **화학법령 Q&A**

**2016. 6**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 동 Q&A 사례집은 지난 5.7~5.30일간 19회의 지역 설명회 및 간담회에서 제기된 문제와 국민신문고, 환경부 민원·질의 결과를 취합한 것입니다.

◇ 이 사례집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13.5.22 제정) 및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13.6.4 개정) 내용과 하위법령 입법예고안(‘14.2.18)에 대한 의견수렴결과 및 규제심사결과(‘14.6.13)를 반영하여 작성되었으며, 향후 그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동 자료집의 답변내용은 질의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아니며,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해당과(화학물질과, 화학물질안전I/F팀)로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목 차



<b>I . 공통사항</b> .....	1
<b>II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화평법)</b>	
1. 법령 적용 여부 .....	5
2. 제조등의 보고 .....	6
3. 등록 .....	9
4. 정보제공 .....	20
<b>III .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b>	
1. 법령일반 .....	21
2.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	22
3.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	32
4.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	43
5. 보칙 및 벌칙 .....	45

## I 공통사항

**Q1. 법률과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어디인가요?**

- 법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http://www.law.go.kr/main.html>),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2. 하위법령은 언제 확정이 될 예정인가요?**

- '14.7월 현재 법제처심사 중이며, 하위법령은 9월 말 확정되어 '15.1.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Q3. 법령상 모든 규정이 '15년 1월 일률적으로 적용되는지요? 별도의 유예기간이 있나요?**

- '15년 1월 화평법 시행과 더불어 등록도 적용되나,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경우 해당 화학물질을 고시한 후에 3년 동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할 수 있는 등록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또한 신규 및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중 위해성에 대한 자료도 제조·수입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참고] 화평법

- 법 제10조제2항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등록유예기간동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할 수 있다.

- 시행규칙안 제9조제1항

등록유예기간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고시한 시점으로부터 3년으로 한다.

- 부칙 제1조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해성 자료 및 평가에 대한 규정은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에 따라 차등 시행한다.

①연간 100톤 이상 : 2015년 1월 1일 ②연간 70톤 이상 : 2017년 1월 1일 ③연간 50톤 이상 : 2018년 1월 1일 ④연간 20톤 이상 : 2019년 1월 1일 ⑤연간 10톤 이상 : 2010년 1월 1일

- 화관법에서는 사고대비물질 영업허가,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제출 기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적용 등 법령 취지, 사업체의 규모와 특성별로 최대 3~5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참고] 화관법

- 부칙 시행규칙 제2조(제한물질의 수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허가증을 갱신·교부받은 경우에 이 법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부칙 시행규칙 제5조(장외영향평가서의 제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장외영향평가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 제출대상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자 :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
2.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 제출대상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0에 해당하고 연간 취급량이 1,000톤 이상인 자 : 이 규칙 시행 후 2년 이내
3.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 제출대상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0에 해당하고 연간 취급량이 1,000톤 미만인 자 :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않는 자로서 연간 취급량이 100톤 이상인 자 : 이 규칙 시행 후 4년 이내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않는 자로서 연간 취급량이 100톤 미만인 자 : 이 규칙 시행 후 5년 이내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장외영향평가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않는 자로서 연간 취급량이 100톤 이상인 자 : 이 규칙 시행 후 4년 이내
2.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않는 자로서 연간 취급량이 100톤 미만인 자 : 이 규칙 시행 후 5년 이내

－ 부칙 시행규칙 제9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한 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관리계획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 제출대상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자 :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
  2. 제1호에 해당하는 않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자 : 이 규칙 시행 후 2년 이내
  3.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않는 자로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자 :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
- 시행규칙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제21조제2항 관련)
- 비고 : 1.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취급시설의 설치 기준을 이 규칙 시행 후 5년 이내에 충족하여야 하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별표4 및 별표 8을 준수하여야 한다.

## II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 1. 법령 적용 여부

#### Q1. 나노물질도 화평법의 적용 대상인가요?

- 화평법상 화학물질의 정의에서 입자 크기에 따라 구체적으로 범위를 설정하고 있지 않고, 또한 적용범위에서도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나노형태이든 아니든 화학물질에 해당합니다.

[참고] 화평법 제2조제1호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EU REACH

나노물질을 화학물질에 포함하여 등록을 받고 있으며,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나노물질에 대한 평가방법 등을 마련 중입니다.

#### Q2. 수입업체는 수입하는 제품(혼합물)내 화학물질 성분을 모두 알지 못하는데, 모르는 성분도 등록 등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요?

- 네, 수입업자는 제품 내 함유된 물질의 성분을 확인하여 해당 화학물질이 화평법에 따른 적용대상이면 등록 등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국외의 제조·생산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외의 제조·생산자가 일정한 자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국외 제조·생산자와 협의하여 의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화평법 제38조

국외 제조·생산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 가능하다.

① 제조 등의 보고 ② 등록신청 ③ 유해물질 함유 제품 신고 ④ 기타

## 2. 제조등의 보고(제8조)

### Q1. 기존화학물질도 보고 대상인가요?

-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경우에는 보고 대상입니다.

[참고] 화평법 제8조제1항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화학물질의 용도 및 그 양 등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Q2. 모든 판매자에게 보고의무가 있나요?

- 화학물질을 사업장 내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자는 보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업장에서 소비용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또한 일반 국민 등 최종 소비자에게 상품형태로 판매하는 자는 보고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화평법 시행규칙안 제6조제5항

화학물질을 판매하는 자란 해당 화학물질을 사업장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Q3. 연구개발용은 보고 제외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취급량에 따라서 보고대상이 될 수도 있나요?**

- 아닙니다. 법령상 취급량에 따른 제한이 없으므로 연구개발용으로 제조·수입·판매되는 화학물질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화평법 시행령안 제7조제1~2호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제조등의 보고 제외대상이다.

- ① 시약 등 과학적 실험, 분석 또는 연구를 위해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
- ② 연구개발용을 제조·수입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화학물질 또는 제품·상품을 개발, 공정을 개선·개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제품·상품의 시범생산)
- ③ 비분리중간체

**Q4. 사업장 밖으로 나가지 않는 분리중간체는 보고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아닙니다.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중간체라고 하는데, 제조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조·분리하지 않는 비분리중간체는 보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나머지 중간체는 보고 대상입니다.

[참고] 화평법 시행령안 제7조제3호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제조등의 보고 제외대상이다.

- ① 시약 등 과학적 실험, 분석 또는 연구를 위해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
- ② 연구개발용을 제조·수입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가~라 생략)
- ③ 비분리중간체

**Q5. 한 물질을 여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별로 보고  
해야 하나요?**

- 여러 용도에 대해서 따로 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하나의 물질마다 하나의 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여러 용도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Q6. 보고 후, 수입하는 물질의 양이 중간에 변경되면 변경  
보고 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물질의 양을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보고 대상이 아니며, 수입자의 정보나 물질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가 변경보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참고] 화평법 시행령안 제8조제1항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변경보고해야 한다.

- ①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의 정보(상호, 소재지, 연락처 등)가 변경된 경우
- ②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분류체계 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Q7. 혼합물 β(A+B+C로 구성)을 수입합니다. A(신규화학물질), B(기존화학물질)의 수입량은 각 1톤을 초과하지 않고, C(기존화학물질)의 수입량만 1톤을 초과한다면 어떤 물질을 보고해야 하나요?

- 혼합물의 경우, 혼합물을 구성하는 각 화학물질 중에서 신규화학물질은 수입량에 상관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기존화학물질은 연간 1톤 이상 수입하는 경우 보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혼합물 내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인 A와 1톤을 초과하는 기존화학물질 C가 보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 화평법 제8조제1항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화학물질의 용도 및 그 양 등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 등록(제10조)

[ 일반 ]

Q1. 등록면제를 받기 위한 심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원칙적으로 등록면제확인 신청 후 3일 이내 검토결과를 통지하여야 하지만, 현장방문을 통한 사실 확인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참고] 화평법 시행규칙안 제14조제1항

협회의 장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 Q2. 신규화학물질 등록 신청은 현재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과 비교하여 어떻게 바뀌나요?

- 등록신청 의무기준, 등록신청시 제출자료, 등록절차 등에 차이가 나는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0.1톤 이하로 제조·수입되는 경우 면제되고, 유해성심사 신청 후 60일 이내 심사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화평법에서는 제조·수입량에 상관없이 모든 신규 화학물질을 등록하여야 제조·수입이 가능하나, 등록신청 후 30일 이내에 등록완료결정 통지를 받은 후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수 있고, 또한 톤수범위별로 다양한 화학물질의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100톤 이상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위해성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시행령안 제9조제1호

유해성심사면제확인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주요 용도,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 ② 급성독성 시험성적서
- ③ 유전독성 시험성적서
- ④ 분해성 시험성적서
- ⑤ 어류급성독성 시험성적서
- ⑥ 물벼룩급성독성 시험성적서
- ⑦ 조류급성독성 시험성적서
- ⑧ 피부자극성 시험성적서
- ⑨ 눈자극성 시험성적서
- ⑩ 피부과민성 시험성적서
- ⑪ 고분자화합물 안정성 등 관련 자료
- ⑫ 환경 배출 경로 및 예상 배출량에 관한 자료

[참고] 화평법

- 제10조제1항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미리 등록하여야 한다.

- 제14조제1항

등록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① 제조·수입하려는 자의 정보
- ② 화학물질의 식별정보
- ③ 화학물질의 용도 ~ (중략) ~
- ④ 화학물질의 유해성
- ⑤ 화학물질의 전과정에서 취급방법과 노출통제·관리방법을 기술한 노출시나리오를 포함한 위해성
- ⑥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관련 자료
- ⑦ 기타

**Q3. 신규화학물질도 등록유예기간이 있나요?**

-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등록 없이 제조·수입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며,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기 전에 미리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Q4. 본사는 혼합물 수입업체입니다. 물질을 각각 등록해야 하나요?**

- 혼합물을 수입하는 경우, 혼합물 내 모든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참고] 화평법 제10조제1항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전에 미리 등록하여야 한다.

**Q5. Fe 합금철도 등록대상 인가요?**

- 합금은 혼합물에 해당하므로 제조·수입되는 합금은 합금을 이루는 구성 화학물질에 따라 등록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Q4참조)

[참고] 화평법 제2조제2호

혼합물이란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구성된 물질 또는 용액을 말한다.

**Q6. 주문자에게 위탁을 받아 화학물질을 제조하고 있는데 누가 등록해야 하나요?**

-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자에게 우선 등록의무가 부여되나,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적 서류(수탁자 정보 및 위탁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탁자가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 화평법 시행규칙안 제10조제2항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작성·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수탁자의 정보(상호, 소재지, 연락처 등)
- ② 위탁계약서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Q7. 본사는 화학물질 사용자입니다. 화평법 상 등록의무 주체는 제조, 수입자라고 나와 있는데, 사용자는 등록 의무가 없나요?**

- 영업과정에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사용하는 하위 사용자인 경우에는 등록의무가 없습니다.

[참고] 화평법 제2조제17호

하위사용자란 영업활동 과정에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 또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Q8. 등록신청-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 모두 끝난 후에 신규 화학물질의 수입이 가능한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등록 신청 후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신청을 위한 자료가 완전하게 제출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후에 수입이 가능하며, 통지는 신청 후 30일 이내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유해성심사 후 유독물질로 지정된 경우, 위해성평가 후 허가물질이나 제한·금지물질로 지정된 경우에는 화학



물질관리법에 따른 취급기준 등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참고] 화평법 제13조제1항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등록여부를 통지받거나 등록면제 대상임을 통지받기 전까지는 해당 화학물질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없다.

**Q9.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 인가요?**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역시 등록신청 후 등록결정통지를 받은 후 또는 등록면제확인신청 후 통지를 받은 후에 제조·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고시한 후 3년 동안에는 등록(결정통지) 없이도 제조·수입이 가능합니다.

[참고] 화평법

– 제13조제1항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등록여부를 통지받거나 등록면제 대상임을 통지받기 전까지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없다.

– 제10조제2항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등록유예기간동안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할 수 있다.

**Q10. 등록 신청을 위하여 경쟁업체 등 다른 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어렵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등록신청하려는 자는 각자 등록신청을 하되, 화학물질의 특성 및 유해성자료에 대하여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제출하여야 하나, 영업비밀 공개에 따른 상업적 손실, 시험자료 선택에 대하여 대표자와 이견이 맞지 않는 경우 등에는 일정한 확인을 받은 후에 개별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 화평법 제15조제1항 후단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고 개별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 ① 기업의 영업비밀이 공개되어 상당한 상업적 손실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②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 ③ 기타(하위규정 참조)

**Q11. 현 유해법에 따라 등록이 면제된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내년 시행되는 화평법에서도 등록이 면제된 업체로 인정되나요?**

-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받은 자는 화평법상 등록면제확인 받은 것으로 보므로 등록면제확인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화평법에서 등록기준에 해당할지라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받은 범위 내에서는 등록할 필요

도 없습니다.

- 하지만,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기준을 변경하였다면 화평법에 따른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간 0.1톤 이하로 면제 확인을 받았거나 연간 10톤 이하 전량 수출용으로 면제 확인을 받았으나 그 범위가 초과된 경우에는 화평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 화평법 부칙 제4조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법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자는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것을 본다.

**Q12. 현 유해법에 따라 '12~'14년에 유해성 심사를 완료하여 등록이 완료된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내년 시행되는 화평법에서도 등록된 것으로 인정되나요?**

- 현 유해법에 따라 유해성심사 결과 통지를 받은 업체는 화평법에서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나, 화평법이 시행된 후에 법에서 정한 신고 절차(신고항목 기재)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참고] 화평법 시행령안 부칙 제2조제1항

유해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자 중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①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 2015년 6월 30일
- ②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경우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고시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Q13. 제조하는 화학물질이 화장품뿐 아니라 일반 산업용(도료)으로도 사용됩니다. 이럴 경우, 화장품 원료로 간주되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아니면, 산업용으로 간주되어 화평법상 등록대상이 되나요?**

- 동일한 화학물질이라도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르므로, 「화장품법」에 따른 관리를 받고 있는 화장품과 화장품 원료는 화평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도료에 포함된 모든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은 화평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 화평법 제3조제4항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4. 「화장품법」 제2조1항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 [ 등록 서류 관련 ]

**Q1. 공정 중 부산물이 생성되는 경우 부산물 확인을 위한 분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 등록신청 자료 중 화학물질 식별정보란에 확인된 불순물·부산물 명칭 및 함량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참고] 화평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화학물질 식별 정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① 화학물질 명칭 등 ② 상품명 ③ 순도 ④ 확인된 불순물·부산물의 명칭 등

**Q2. 등록자료 작성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정보들을 활용해도 되나요?**

- MSDS 내에 있는 화학물질 정보의 활용은 가능하나, MSDS 자료 자체가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로 인정될 수는 없고, 화평법에 따른 시험자료의 인정요건 또는 시험자료 대신 인정하는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사전 확인하여야 합니다.

**Q3. 등록자료 작성 시, 환경부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에서 제공하는 유해성 자료를 사용해도 되나요?**

- 안전성평가서 등 NCIS에서 제공되는 유해성 시험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 화평법 제19조제2항

유해성평가 결과를 등록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Q4. 본사는 다국적기업이며, 취급 물질에 대하여 REACH 등록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제출한 영문 시험자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 영문으로 작성된 시험자료를 등록신청에 필요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나, 등록신청서는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Q5. 독일에서 표면처리 약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입니다. 이미 EU REACH에 등록하였는데, 화평법 등록자료로 독일 GLP 인증기관에서 수행한 시험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 GLP 인증기관에서 수행한 시험자료는 등록신청 서류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Q6. 본사는 취급하는 아세톤을 주로 유럽에서 수입하고 일부는 중국에서도 수입합니다. 두 나라 모두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 유럽과 중국으로부터 물질 정보를 수집·취합하여 등록에 필요한 적정서류를 취사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Q7. 유해성자료의 세부 항목과 국내 시험기관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어디인가요?

- 유해성자료의 세부항목은 화평법 입법예고(안)내 시행규칙 별표 4(<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국내 GLP 시험기관 현황은 화평법·화관법 산업계도움센터 홈페이지(<http://www.chemnavi.or.kr>)에서 확인 가능함.

#### 4. 정보제공 (제29조)

Q1. 별도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고용부 MSDS를 보완하여 사용이 가능한가요?

- 고용부 MSDS의 서식도 사용가능하나, 위해성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첨부해서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참고] 화평법 제29조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록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참고] 화평법 시행규칙안 제45조제1항 후단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별지에 위해성정보에 관한 내용을 첨부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II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 1. 법령 일반

[ 정의, 적용범위,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

**Q1. 우리 업체는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일반화학물질을 취급하는데 화관법의 적용을 받나요?**

- 화관법상의 영업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통계조사나 배출량조사 등의 대상은 될 수 있고, 화학사고 발생시 신고, 조치명령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Q2. 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두 법이 중복될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법률이고,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률로서 해당 목적과 규정에 따라 각각 적용을 받게 됩니다.

**Q3. 화학물질을 제조, 생산, 수입하지 않고, 단순 보관을 하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내용이 있는지요?**

-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생산, 수입하는 자 외에 보관·저장, 운반, 사용하는 경우에도 누구든지 법령상 정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참고] 법 제2조(정의)

(중략) 7.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중략)

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 (중략)

## Q5. 화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질이 있나요?

○ 법 제3조 적용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및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

## Q1. 여러 화학물질을 함께 보관하는 경우 특별한 취급기준이 있나요?

○ 화학물질별로 구획을 나눠서 보관해야 하며 물질별로 정해진 취급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세부기준은 시행규칙 [별표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시행규칙 [별표1]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제8조 관련)

(중략) 15) 종류가 다른 화학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안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간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상호간에 필요한 간격을 둘 것 (중략)

**Q2. 유독물 영업등록 대상이 아닌데도 화관법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항목을 따라야 하나요?**

-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 취급하는 경우 취급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참고] 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유해  
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 1~6.

**Q3. 운반계획서는 언제 누가 작성해야 하나요?**

-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을 법령  
에서 정한 양(유독물질 5,000kg,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사고  
대비물질 3,000kg)을 초과하여 운반하려는 경우, 운반하는 자가  
사전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운반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법 제15조(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보관량 제한 등)

- ③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가 1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운반자, 운반시간, 운반경로·노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운반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시행규칙 제11조(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작성·제출 등)

- ② 제1항에 따른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의 양을 초과하여 사업장 밖에서 운반하려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9호서식의 운반계획서(전자문서로 된 운반계획서를 포함한다)에 통행도로 상세 서류(출발부터 도착까지의 운반시간, 운반경로, 노선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Q4. 화관법에 따라 안전 진단을 받아야 하는 취급시설은 무엇이며, 시행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 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후 시설의 설치·운영자는 ①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 균열, 부식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되거나 ②취급시설의 설치 후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①의 경우에는 정기·수시검사 결과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②의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 결과 통지 후 취급시설의 위험도 결과에 따라 4년~12년 경과한 날을 전후로 60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참고] 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등)

④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취급시설의 안전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沈下)·균열·부식(腐蝕)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후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시행규칙 제22조(검사기관 등)

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제4항 제2호, 시행규칙 제24조(안전진단 등) 2항에서 법 24조 제4항 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에 대한 검토 결과(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험도에 대한 검토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매 4년으로 하고,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함

1. 고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매 4년
2. 중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매 8년
3. 저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매 12년

Q5. '14년 현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시공 중이며, '15년 이후 영업허가를 받게 될 경우, 이미 시공이 완료되어 화관법상의 설치 및 관리기준의 적용이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유예기간이 있는지요?

- 화관법이 시행되는 '15.1.1일 이전에 설치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하여는 법 시행 후 5년 내에 시설개선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 시행규칙 [ 별표5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제22조제2항 관련)

비고 : 1.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취급시설의 설치 기준을 이 규칙 시행 후 5년 이내에 충족하여야 한다.

**Q6. 화관법에 따라 저장탱크의 이격거리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시설을 변경하여야 하나요?**

- 화관법 시행('15.1.1) 후 5년 이내에 기존 시설을 새로운 기준에 충족되도록 보완, 변경, 개선하여야 합니다.

[참고] 시행규칙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제21조제2항 관련)

비고 : 1.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취급시설의 설치 기준을 이 규칙 시행 후 5년 이내에 충족하여야 하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별표4 및 별표8을 준수하여야 한다.

Q7.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은 도급인에게 심야시간대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게 하거나 취급시설의 공사·보수를 무리하게 요구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사업장은 4조 3교대로 야간에도 유해화학물질을 포장하고 있는데, 위법인지요?

- 동 조항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수급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므로, 정상적인 야간 교대근무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참고] 법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 ④ 도급인이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인을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수급인에게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규칙 제32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 ③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도급계약 등에 정해진 공사·보수 기간의 단축
2. 심야시간대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및 취급시설의 공사·보수. 다만,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화학사고 발생 우려에 따른 수급인의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및 취급시설의 공사·보수·운영 지시
4. 화학사고 발생 사실 또는 발생 우려의 은폐
5.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Q8. 법 제31조에 따른 도급계약의 범위에 단순 설비변경 및 시설보수(포장 관련 시설)도 해당되는지요?

- 화관법에서 정하는 도급의 범위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도급하는 경우로서, 단순한 설비변경 및 시설보수는 도급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시설 내에 물질이 증기, 분진 등의 형태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고] 법 제2조(정의)

12. “취급”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 장외영향평가서 ]

Q9. A사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으로서 '14년 중순경 공장증설을 완료하고, 공장가동에 따른 사용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장외영향평가제도의 도입시점 이전인 '14년 중순 공장증설을 완료할 경우,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화관법이 시행되는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설치 당시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법 시행 이후 경과조치에 의거 취급량 등에 따라 1~5년 이내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부칙 시행규칙 제5조(장외영향평가서의 제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장외영향평가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자 :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
2.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0에 해당하고 연간 취급량이 1,000톤 이상인 자 : 이 규칙 시행 후 2년 이내
3.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0에 해당하고 연간 취급량이 1,000톤 미만인 자 :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않는 자로서 연간 취급량이 100톤 이상인 자 : 이 규칙 시행 후 4년 이내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않는 자로서 연간 취급량이 100톤 미만인 자 : 이 규칙 시행 후 5년 이내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장외영향평가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않는 자로서 연간 취급량이 100톤 이상인 자 : 이 규칙 시행 후 4년 이내
2.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않는 자로서 연간 취급량이 100톤 미만인 자 : 이 규칙 시행 후 5년 이내



**Q10. A사는 메탄올을 취급하고 있는데, 한 사업장 내에서 저장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동일 사업장 내의 모든 취급시설에 대해서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시설 변경으로 사업장 밖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경우 장외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지침서를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Q11. 유독물과 취급제한물질을 다루고 있는 A사업장이 공정 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경우 장외영향평가서를 언제 작성해야 되나요?**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설 규모에 따라 1~5년까지 경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12. 당사는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이 연간 100톤 이하로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면제되는 사업장입니다.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도 대부분 기업연구소에서 연구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 연구시설의 경우 화관법에서 정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Q13. 장외영향평가서를 외부 전문가가 아닌 사내 인력을 활용해서  
작성·제출하여도 되나요?

- 장외영향평가서는 사업자 스스로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환경부는 안전관리 담당자 등 사내 근로자가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범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 또한 전문 컨설턴트를 육성하여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 지원하겠습니다.

[참고] 법 제23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 ④ 장외영향평가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다.

### 3.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 [ 영업구분 및 허가 ]

**Q1. 기존의 유독물 영업 등록업체도 다시 등록을 해야 하나요?**

- 다시 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유해법에 따라 유독물 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화관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다만, 장외영향평가서나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 대상일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 제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한 자가 이 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Q3. 유해화학물질의 사용량에 따라 영업허가에서 제외되기도 하나요?**

- 현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면제되는 경우에 대한 법령안을 마련 중이므로 영업허가 면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추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등록을 하여야 하나요?**

- 유해화학물질별로 취급시설과 장비,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 법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2.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3.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하는 영업
4.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하는 영업
5.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도장(塗裝)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참고] 법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Q5. A사업장은 전용공업지역에서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 물질을 240톤 이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영업 허가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기존 유해법에 따라 유독물인 사고대비물질은 등록대상으로서 화관법 시행('15.1.1) 이전에 등록을 한 경우 화관법상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 다만, 유독물이 아닌 사고대비물질의 경우 유해법상 등록면제에 해당되나, 화관법에서는 허가 대상으로서 별도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 법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참고] 시행규칙 제31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질(유독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자. (중략)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240톤 이하의 유독물질(유독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자로 한다.
4.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 중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제출 대상이 아닌 자.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또는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Q6. 당 사업장은 전용공업지역에 입지하고 있으며 사고대비물질을 연간 1톤 미만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영업등록 대상이 되는지요?**

-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 중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의 제출 대상이 아닌 자는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가 면제됩니다. 즉, 사고대비물질 사용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이외의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시설 규모에 따라 최대 3년 이내에 받으셔야 합니다.

[ 도급신고 ]

**Q7. 당사는 유독물질을 사용하는 업체입니다. 제품 생산 공정 중 유독물을 취급하는 공정의 일부를 도급하는 경우 도급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언제 해야 하는지요?**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득한 사업자에게 유독물 취급을 위탁하는 경우는 화관법상 도급(하도급 포함)으로 보지 않아 도급신고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영업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게 하는 것은 화관법상 도급에 해당이 되어 도급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는 도급을 위탁한 원청업체가 도급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법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및 시행규칙 제32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는 그 도급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Q8. 유해화학물질 출하업무를 도급한 경우 도급을 한 원청업체가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나요?**

- 도급을 위탁받은 업체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인 경우에는 위탁받은 업체가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위탁받은 업체가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위탁한 업체가 선임하여야 합니다.

[참고] 법 제3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 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Q9. 유독물 저장시설, 사용시설에 대한 보수 작업 시에도  
도급신고를 해야 하나요?**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도급신고를 해야 함. 만약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고 단순 보수하는 경우에는 도급신고의 범위는 아님. 다만, 시설 내에 물질이 증기, 분진 등의 형태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고] 법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기술인력 등 ]

**Q10.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화관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을 갖추고, 제32조 제1항에 의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인력과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간 겸직이 가능한지요?**

-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기술인력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겸직할 수 있습니다.



[참고] 시행령 제1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②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술택격법」에 따른 화공안전·화공·가스·대기관리·수질관리·폐기물처리·산업위생관리 기술사 소지자
2. 「국가기술택격법」에 따른 화공·산업안전·가스·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처리·위험물·산업위생관리 기사 소지자
3. 「국가기술택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처리·위험물·가스·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또는 환경·위험물기능사 소지자
4.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실업계고등학교 화학과 또는 화공과를 포함한다)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과목을 이수한 자 또는 화학물질 취급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중에서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자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자

[참고] 시행규칙 [별표 6]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27조제3항 관련)

### Q11.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①화공안전·화공·가스·산업위생관리 기술사 자격을 소지하거나 ②화공·산업안전·가스·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처리·위험물·산업위생관리 기사자격을 소지한 자, ③산업안전·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처리·위험물·가스·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또는 환경·위험물기능사 소지자, ④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실업계고등학교 화학과 또는 화공과

포함)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과목을 이수한 자 또는 화학물질 취급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중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 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자, ⑤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①~③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참고] 시행령 제1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②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화공·가스·산업위생관리 기술사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산업안전·가스·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처리·위험물·산업위생관리기사 소지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처리·위험물·가스산업기사·환경기능사 소지자
4.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실업계고등학교 화학과 또는 화공과를 포함한다)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과목을 이수한 자 또는 화학물질 취급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중에서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자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Q1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 제1항의 유독물관리자의 자격기준에 의한 유독물 양성교육 이수자도 화관법상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될 수 있는지요?**

- 아니요. 유해법상 유독물 양성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화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참고] 시행령 제1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 ②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화공·가스·산업위생관리 기술사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산업안전·가스·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처리·위험물·산업위생관리기사 소지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처리·위험물·가스산업기사·환경기능사 소지자
  4.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실업계고등학교 화학과 또는 화공과를 포함한다)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과목을 이수한 자 또는 화학물질 취급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중에서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자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Q1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화관법상 기술인력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6]에 의하며,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 시행규칙 [별표 6]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27조제3항 관련)

## 2. 기술인력 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취급시설 없이 판매하는 자는 제외한다.

- 1) 「국가기술훈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화공·가스·산업위생 관리 기술사를 취득한 사람
- 2) 산업안전·기계·화공·위험물·가스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3) 「국가기술훈자격법」에 따른 화공·산업안전·가스·산업위생 관리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 4) 「국가기술훈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처리·위험물·가스·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또는 환경·위험물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7년 이상인 사람

나. 법 제32조, 영 제12조 및 제3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Q14. 올해 유독물 관리자 교육을 수강하는 경우 차기(次期) 교육은 언제 수강하여야 하나요?**

- 유해법에 따르면 3년마다, 화관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2년마다 교육을 받기 때문에 '16년 12.31일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 법 제33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 ①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참고] 시행규칙 제37조(안전교육 결과보고 등)

-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는 제35조제1항의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매 2년마다 1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통계·배출량 조사표 작성,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16시간을 추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Q15.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을 운송하는 기사가 갖추어야 하는 자격이 있는지요?**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 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 1~4. 5.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일 것

## 4.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 [ 사고대비물질 관리, 화학사고 대응 등 ]

**Q1. 화관법에 따르면 위해관리계획서를 사업장 주변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하는데 고지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 법에서 정한 고지방법으로는 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 등이 있습니다.

[참고] 시행규칙 제48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③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고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개별사업장 또는 여러 사업장이 공동으로 고지할 수 있다.

1. 서면통지는 우편, 전자우편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2. 개별설명 후에는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3. 집합전달은 공청회 또는 설명회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Q2.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일반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화관법상 화학사고로서 대응조치를 이행해야 하나요?**

-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 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으로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을 말하므로 일반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시에도 즉시 신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 법 제2조(정의)

13.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

[참 고] 법 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②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Q3. 배관접합부에서 화학물질이 단순 누출되는 경우에도 화관법상 신고대상이 되나요?**

○ 네. 단순누출도 화학사고로 판단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 법 제2조(정의)

13.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

[참 고] 법 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 5. 보칙 및 벌칙

[ 정보시스템, 벌칙, 수수료, 양벌규정, 경과조치 등 ]

Q1. 도급신고를 한 이후 수급업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원청사에도 책임이 있나요?

○ 원청사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Q2. 화관법에서 개인보호장구 미착용과 관련하여서도 영업정지가 될 수 있나요?

○ 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아 작업자가 개인보호구 착용의무를 3차례 위반한 경우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였으나 작업자가 착용의무를 4차례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참고]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②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참고] 시행규칙 [별표7] 행정처분 기준(제40조제1항 관련)

##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4호	개선명령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가)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아 작업자가 착용하지 않은 경우					
나) 사업주가 지급하였으나 작업자가 착용하지 않은 경우		경고	경고	경고	영업정지 5일